

담당자 : 강성은 사원 연금WM본부 Tel : 02-2163-5655 E-mail : sungeun.kang@kbf.com

문서번호 : 마케팅2024-00314

시행일자 : 2024. 05. 16

수신 : 수신처 참조

참조 : 업무 담당자

제목 :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귀 사(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래와 같이 해당 펀드의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펀드명	책임매니저 변경	부책임매니저 변경	변경내용	
			갱신	기타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단기자금 증권 자투자신탁(단기자금-재간접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스타 중국본토 CSI3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온국민 평생소득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 온국민 평생소득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KB 재형 밸류 포커스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 재형 이머징 국공채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KB 은국민 평생소득 TIF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은국민 평생소득 TIF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KB 연금 코리아 룬숏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퇴직연금 성장6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위험등급 변경(3등급→4등급)
KB 연금 단기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			
KB 개인용 MMF P-1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통중국 고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KB 연금 통중국 고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퇴직연금 통중국 고배당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통중국 고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밸류 포커스 소득공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KB 가치배당 소득공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위험등급 변경(3등급→4등급)
KB 지속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허승재/강진원 →허승재/장여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중국본토 A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유럽 셀렉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위험등급 변경(2등급→3등급)
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KB 가치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 가치배당 2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H)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H)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SD)(주식)			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김수혁/김빈나 →김수혁/구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	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위험등급 변경(2등급->1등급)
KB 코리아 뉴웨이브 증권 투자신탁(주식)	최희은→윤성노	심효섭/윤성노 →신민재	-	
KB스타 재팬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0	전부해지된 모펀드 내역 삭제 . C-P/C-Pe 클래스 추가
KB스타 유로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C-P/C-Pe 클래스 추가

나. 효력발생일 : 2024년 5월 17일(금)

다. 수시공시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

* 첨부파일 :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각 1부. 끝.

수신처: BNK경남은행,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KB손해보험, KB증권, KR투자증권, NH투자증권, NH선물, SK증권, 광주은행, 교보생명, 교보증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은행(펀드판매), 다올투자증권, 대구은행, 대신증권, 디에스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부산은행,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상상인증권, 수협은행, 신영증권,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예금), 우리종합금융,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한양증권,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현대해상화재, 흥국증권

연금WM본부장

